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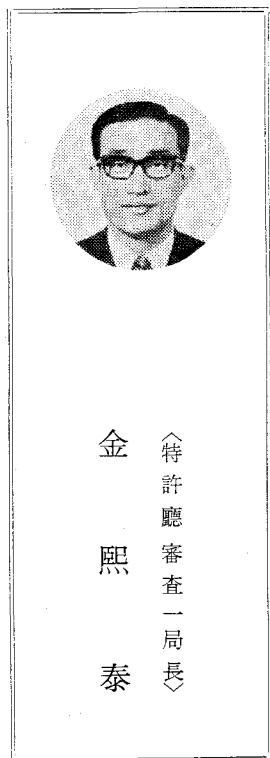
審查効率化를 위한 企業의 協調方案

① 企業과 工業所有權

오늘날과 같은 燥烈한 競爭社會에서 企業이 살아남고, 더욱이 優位를確保하기 위해서는 恒常 最新의 技術과 考案을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創案하고 新製品을 開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새로운 기술과 고안은 工業所有權制度를 活用, 이를 權利化하여 保護받고 獨占權을 行使함으로써 他企業의 追從을 排除하여야 할 것이다. 過去 우리나라 大部分의 기업은 價格面과 마케팅爲主의 經營戰略으로 運營되어온 나머지 模倣의 領域을 脱皮하지 못한채 새로운 技術과 新製品의 開發을 疎忽히 하였고 공업소유권제도에 대하여는 더욱 認識不足, 無關心에 그쳤음을 否認할수 없는事實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업들이 創作과 개발에 대한 意志와 努力 없이 이렇듯 安逸한 企業運營을 持續해야 할 것인지는 깊히 反省해 보아야 할 問題라 하겠다. 더욱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하는 工業立國과 輸出立國을 우리나라 經濟政策의 座標로 設定한 以上 技術革新을 뒷받침하는 公業소유권제도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의 活用이 기업의 緊急한 當面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審查의 効率化

1977年 6月末 現在 特許廳에 登錄된 公業소유권은 95,254件이며, 최근 2,3年間의 年間出願件數는 約 3萬件에 肉追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에 따라 未處理件數는 지난 數年間 累積되어 今年 6月末 現在 46,922건에 達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商標와 경력이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積滯된 未處理件數의 早速한 解消는 우리 특허청의 時急한 과제요 이는 審查의 效率化를 통해서만 可能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其間 政府는 行政機構를 改編特許局을 廳으로 昇格시켜 그機能을 擴大하였고 審查官의 量的인 補強과 各種制度의 改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심사의 3大要素인迅速, 正確, 公正의 實效를 求む기 위하여 復數審查制를 採擇하였고, 심사에 必要한 國內外의 各種 參證資料를 確保하고 이를 效率的으로 適時 活用할수 있도록 科學的으로 分類整備중에 있으며 심사관의 質的向上을 위한 研修와 審查基準의 整備등 심사의 效率化를 위한 여러가지 方案을 講究중에 있으나 이는 기업의 協調가前提되지 않고서는 그 실효를 겸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겠다. 여기에 기업에서 協助해 주어야 할 문제를 몇 가지 提示해보자 한다.

③ 企業의 協調方案

1. 特許管理專擔部署의 設置

오늘날의 經濟社會를 產業情報時代요 競爭의時代라 한다면 우리의 기업들이 國内外의 치열한 競爭에서 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重要한 關鍵은 그 기업에서 公業소유권제도를 얼마나 理解하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하겠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國内外의 特許情報의 신속한 入手와 綿密한 事前事後調查를 비롯하여 開發한 새로운 기술이나 고안을 조속히 出願하여

特 輯

權利化하고 그 권리가 他社에 侵害當하지 않도록 防禦하는 同時に 他人의 권리와 침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特許管理業務는 오늘날의 企業經營上 心須不可決한 中요한 部分으로 어느 分野보다 기업의 經營戰略에 中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先進國에서는 規模의 大小를 不問하고 大部分의 기업들은 工業所有權專擔部署를 企業內에 설치하여 기술개발에 力點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도 이의전 담부서와 技術開發機構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外面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기업의 最高經營者는 오늘의 經濟現實을 直視하고, 先進工業國의 기업이 걸어온 밭자취를 거울삼아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이제는 기업의 規模가 어떻든 工業所有權關係를 전담하는 부서를 기업내에 설치하고 特許管理體制를 갖추어 산업정보를 신속히 蒐集活用하고 他社의 不實權利設定을 未然에 防止하여 自己企業의 發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자기기업을 위한 질인 동시에 結果的으로는 當局의 審查效率化에 크게 寄與하는 方法이라 하겠다.

2. 公衆審查에의 參與

심사관이 아무리 有能하고 豊富한 審查資料가 과학적인 檢索시스템에 의하여 정확하게 提供된다 하드라도 심사의 未盡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補完하기 위하여 公衆審查制度(異議申請制度)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細分化된 분야에 從事하고 있는 각企業의 專門가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공중심사에 積極參與하여 심사가 完璧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不實權利設定을 事前에 防止하여 자기기업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또한 業界에서도 企業相互間의 緊密한 協調下에 情報交換 및 異議申請資料등을 提供해 주는 風土가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과 같이 出願件數가 積滯하여 量的處理에 置重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에 있어서는 어느때보다 公衆審查參與는 더욱 切實하다 하겠다. 따라서 각 기업이 공중심사에 積極的으로 참여하고 업계의 협조가 이루어질 때 심사의 效率화를 加

一層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3. 審查資料의 提供

심사자료라 함은 自社製品의 캐털로그, 技術文獻, 各種 刊行物뿐만 아니라, 이미 公知되고 있는 외국의 자료까지 包含됨은 물론이다. 심사의 정확을 위해서는 各種 審查資料의 確保備置가先行되어야 하나, 특허청에서는 아직도 充分한 심사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意匠分野는 공중심사제도 없이 登錄與否를 決定하게 되므로 심사자료의 충분한 확보는 實로 火急하고 切實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 權利化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권리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제품의 캐털로그, 模型 또는 見本, 문현을 특허청에 隨時 提供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제공된 자료는 특허청에서 바로 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그 제품과同一 또는 類似한 것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며, 또한 제공된 공지의 外國資料는 타인이 外國製品을 盜用하여 권리화하는 것을 막는 手段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특허청에 캐털로그등 심사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審查效率化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不意의 被害를 預防하는 防禦出願의 實益을 얻게되어 기업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것임을 留意하여 기업에서는 各種 審查資料를 가능한한 빨리 그리고 빠짐없이 특허청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出願의 事前調查

우리나라의 出願件數는 先進國에 比하면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원마저도 大部分이 出願人の 創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타인이 이미 공지시킨 같은 기술, 고안을 출원한 것으로 이는 獨占權行使를 目的으로 하는 것이 많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출원의 拒絕率이 特許 90%내외, 實用新案 70~80%, 意匠 60~70%, 商標 30% 내외나되는 높은 比率이 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實證은 結果的으로 審查處理의 效率화를 阻害하는 反面 기업 스스로도 浪費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개발한 새로운 기

출, 신제품을 출원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선행기술, 고안을 충분히 조사하여 特許性(登録)을 檢討하여 가능한限 특히 또는 登錄要件에 合當한 것만을 출원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출원의 事前調査로서 불실한 출원을 기업 스스로가 避하게 되고 不必要한 낭비를 사전에豫防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출원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심사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의 낭비를 제거하는 一舉兩得의 實益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5. 審查促進을 위한 其他 方案

上述한 이외에도 심사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考慮할 수 있는 것은 첫째, 出願書類欠缺의 自進補正이다. 즉 권리의 出願時는 出願主義의 制約으로 因하여 내용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面도 있겠으나, 그 흡결이 있을 경우에는 審查着手前에 自進補正하는 것이 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둘째, 특히 意匠에 있어서는 出願國自己製品을 市場化하여 공지시킨 경우에는 出願後相當한期間이 經過한 후에 심사가 착수됨으로서 市場調查時公知의 時點을 確認하기 어려운 難點을 解決하는 方案으로 同製品을 출원후에 시장화 했음을 跡明하는 客觀的

으로 信憑性 있는 立證資料를 作成하여 심사착수 전에 自進提出하는 것이 자기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뿐만 아니라 심사처리를 促進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의장에 있어서 각分野別로 該當 同業者團體가 디자인과 關聯된 전담부서를 설치(디자인센터 등)하여 많은 자료를 保有하여 출원을 위한 사전조사와 업계의 紛爭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청의 심사관에게도 참증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안도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 하겠다.

④ 結 言

이상과 같이 筆者の 素朴한 所見을 披歷하였거니와 確信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공업소유권제도를 如何히 效果的으로 활용하느냐가 企業의 繁榮과 나아가서는 國家產業發展의 關鍵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企業人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공업소유권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特許行政의 當面課題인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아낌 없는 聲援과 協調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

(新)刊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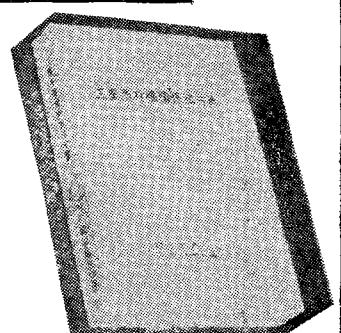
韓國特許協會 編

改正 工業所有權關係法令集 (1977. 6. 1)

- | | |
|------------|------------------|
| ◎ ◇ 特 許 法 | ◇ 特許廳 職制 |
| 主 ◇ 実用新案法 |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
| 要 ◇ 意 匠 法 | ◇ 辦理士法 |
| 內 ◇ 商 標 法 | ◇ 工業所有權 保護協定国 一覽 |
| 容 ◇ 發明保護法 | ◇ 파리協約 |
| ◎ ◇ 各法 施行令 | ◇ WIPO協約 |

— 總 518面, 4 · 6版, 洋裝製本 —

限定部數發行으로 先着順 実費 配本



서울 中区 莉洞 2街48-20
TEL. 25-2830, 26-5978